

광주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1가단5095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 1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285,7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박옥희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집행권원취득

소외 C 유한회사는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차전467469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6. "B은 위 유한회사에게 105,561,168원 및 그 중 29,186,261원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란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9.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C 유한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채권을 2018. 12. 27. 양수하였습니다.

2. 위 B의 사해행위

가. 피고와 위 B은 친남매지간으로 서로의 생활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입니다.

나.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1) 피고와 위 B은 2020. 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서 위 B의 유일한 재산이고, 위 B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그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여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준 것입니다.

(2)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위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위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0. 1. 13.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가. 위 B의 채권자인 소외 D 유한회사는 이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2020가단 8628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아래 표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중 B의 상속분 상당액

과 원고의 피보전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2020. 9. 25.경 아파트 단지의 하위 평균 매매가인 64,000,000원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원고는 일반 평균 매매가인 69,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 상당액은 18,285,714원(= 64,000,000원 × 2/7)인 반면에,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7 상속분의 시가 상당액을 상회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분의 시가 상당액인 18,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는 것이므로, 위 판결의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 상당액은 18,285,714원(= 64,000,000원 × 2/7)인 반면에, 피보전 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위 105,561,168원)은 2/7 상속분의 시가 상당액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분의 시가 상당액인 18,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아파트 G동

[도로명주소]

광주 광산구 H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평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 광산구 E 대 7553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5층 I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44.9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5532.10분의 30.49. 끝.

